**[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년도 재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2024년도 03월 학생자치기구 재선거 후보자 등록공고]**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

한성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 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가독성을 위해 전문을 pdf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며, 출마를 준비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전문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퇴서 배부 : 2024년 03월 06일 ~ 03월 12일 12시-18시 (진리관 204호 총대의원회실)

\* 사퇴마감일시 : 2024년 03월 12일 18시

\* 후보자 등록기간 : 2024년 03월 13일 12시 - 03월 19일 18시

\* 접수방법 : 진리관 204호 총대의원회에 비치된 등록원서 및 추천서 수령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본부장 회의 :2024년 03월 19일 18시 이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원서 검토 이후)

\* 유세기간 : 2024년 03월 20일 ~ 04월 02일 23시 59분

\* 정책토론회 : 2024년 3월 27일 14시

\* 투표일 : 2024년 04월 03일(수) , 04월 04일(목) 09시 – 23시

\* 개표일시 : 2024년 04월 05일(금) 16시

\* 예비일 : 04월 05일(금) (예비일로 진행될 경우 9시 – 18시 투표, 19시 개표)

\* 투표방법 :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 1개소 운영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2.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은 회원 5% 이상의 추천서 (아래의 후보자 추천서 항목 참고)

3. 재학증명서 (후보자 모두)

4. 성적증명서 (후보자 모두)

5. 선거 본부 위원(장) 명단

6. 투개표인 참관인 명단

7. 중선관위가 제시한 규격에 맞는 선거 유세 포스터 파일(AI, PDF)

8. 공탁금 5만원(선거활동에 필요한 경비, 선거 안내책자 등)

9.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 후보자는 등록기간 내 위의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서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의 참석과 참석인원 중 과반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원 자격 요건>

1. 단과대학 정․부회장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단대 정원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창의융합대학 정회장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부회장은 3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창의융합 단대 정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정, 부후보는 서로 소속 학과 혹은 제 1트랙이 속한 학과 혹은 학부가 달라야 한다. (단, 동아리 연합회 정, 부회장은 소속 동아리가 달라야 한다.)

\* 2024년도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공개기구 국장, 상임위원, 대의원으로 등록된 자는 선거 출마 및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단,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사임한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전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1.88을 넘어야한다.

\* 직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징계나 제적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IPP 및 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선거 재적>

1. 각 단과대학은 2024년 상반기 각 단과대학에 등록한 1학년 학생들과, 해당 단과대학 소속의 학과 혹은 제 1트랙에 등록한 인원 전체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2. 휴학생, 자퇴생은 재적 인원에서 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전체 재적 인원수를 등록원서 배부 시 공지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후보자 추천서>

1. 추천서는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

2. 추천서의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정 양식을 따른다.

3. 서면 추천서는 등록원서와 함께 수령할 수 있다.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면으로 추천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 후보자는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추천서 양식은 등록원서 수령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의 이름, 소속, 학년, 후보자 약력만을 포함한다.

- 온라인 추천서 역시 후보자가 추천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받은 추천서여야 한다.

- 후보자는 추천인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일, 기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1:1로 추천서를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추천서를 전달하거나 3인 이상의 단체 톡방에서 추천서를 공유할 경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 후보자 추천 사실 확인을 위해 등록서류 검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무작위로 추천인 20%에게 추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과반 이상의 추천인이 1)후보자 본인이 직접 추천서를 받지 않았거나 2)추천인이 추천 사실을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 등록이 취소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보자에게 추천인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 서면추천서와 온라인 추천서에 중복된 인원이 발생할 경우 1인의 추천만을 인정한다.

\* 후보자 본인이 단톡방을 통해 추천서를 전달할 경우, 해당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는 전원은 추천인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후 해당 인원들에 대해서는 1:1로도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

\* 제 3자를 통한 추천서 작성은 추천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포스터 양식>

- 필수 내용 : 선거운동본부 이름, 후보자 이름 및 약력, 공약사항, 후보자 사진

- 출력 사이즈 : A2 (420 x 594mm)

- 상단 20mm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식

- 하단 3-40mm : 기호 및 선거운동본부 이름표기 (후보자 등록까지 기호 항목은 ‘0번’으로 표기)

- 포스터 기본 양식(ai파일)은 등록원서 수령 시 중선관위에서 배포.

\* 등록원서 수령 시 USB 지참

<관련 학생회칙>

[선거 시행세칙 11장 90조]

1. 재선거는 당해 총선거 단위 중 무산된 단위에 해당하여 시행하며, 다음 해 3월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1)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총선거에 해당 단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3) 선거무효 또는 당선 무효가 발생했을 경우

4) 낙선이 발생했을 경우

2. 재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선거 일정과 선거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3. 재선거는 본 선거 시행세칙을 기반으로 시행한다.

[선거 시행세칙 1장 5조]

1. 이 세칙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이 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선거의 민주성,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자 독단의 자의적 해석은 지양하도록 한다.

2.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의 의결로 해석을 확정한다.

[선거 시행세칙 2장 9조]

1. 총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2)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은 회원 5% 이상의 추천서

3) 재학증명서

4) 성적증명서

5) 투개표인 참관인 명단

6) 학생회비 납부 확인서

7)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2. 총선거의 모든 입후보자는 2인 1조로 공동 입후보하며 등록 마감일 18시까지 전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 시행세칙 5장 36조]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 또는 언동 포함)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교내 학생 자치기구 추천인의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3.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본 세칙의 규정에 한하여 해당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만 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확대운영위원회 위원 (단, 등록마감일 7일 전까지 사임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신임 학과(부)학생회장, 부회장, 트랙학생회장(단, 학과(부), 트랙학생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학과(부), 트랙은 총학생회 선거 운동기간 현재 학생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상임위원, 대의원 (단, 등록마감일 7일 전까지 사임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위 학생회의 국장 (단, 등록마감일 7일 전까지 사임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 휴학 및 정학 중인 자

6) 본교의 재학생이 아닌 자

[선거 시행세칙 4장 26조]

1.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 기간 동안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을 돕고 선거운동본부의 활동을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선거운동본부원은 후보자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정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매일 1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이에 대한 효력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3.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거나, 신청에 결함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의 징계를 줄 수 있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의 징계를 줄 수 있다. (단, 해당 선거운동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6.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는 자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7.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때는 해당 인원에 대한 선거운동권을 박탈한다.

[선거 시행세칙 6장 55조]

1. 투표는 최대 3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표 시간은 27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2. 투표 마감 기준으로 투표율이 40%를 초과하고 50%미만인 단위가 존재할 경우 예비일 1일을 추가하여 진행한다.

3. 마감 시간이 지나도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장에 대기 중인 투표인은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 시행세칙 4장 31조 (참관인 자격)]

후보자 등록서류에 명시된 자로 각 후보당 1인 이내로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동규 010-6439-0203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